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고사건 기간 내 미처리 시 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999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 신고사건 기간 내 미처리 시 그 사유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2

I. 제안경위

1. 제안자 : 전현회의원 등 14인
2. 제안일 : 2024. 11. 28.
3. 회부일 : 2024. 11.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처리하여야 하는 기간이 도래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한 이유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신고에 대한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신고처리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59조제9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⑧ (생략) <u><신설></u>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제8항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u>⑨</u> (생략)	<u>⑩</u> (현행 제9항과 같음)

- 현행법상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음.¹⁾ 권익위는 접수한 부패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며, 해당 조사기관은 해당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함. 다만,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등에는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되,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²⁾
- 최근 5년간 부패행위 신고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평균 77.5일로, 90일 초과 처리건수는 전체의 27.1%를 차지하고 있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위원회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이 제3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신고자를 상대로 제1항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⑧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⑨ (생략)

<부패신고 현황(공공재정 부정청구 포함)>

(단위: 건, 일, %)

연 도	총 건수	처리기간별 건수						평균 처리 기간
		60일이내		61일~90일		90일초과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20	1,830	711	38.9	395	21.6	724	39.6	92.9
2021	1,979	899	45.4	422	21.3	658	33.2	88.5
2022	933	575	61.6	119	12.8	239	25.6	73.5
2023	976	702	71.9	187	19.2	87	8.9	51.5
2024	943	626	66.4	220	23.3	97	10.3	55.6
합계	6,661	3,513	52.7	1,343	20.2	1,805	27.1	77.5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 동 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권익위는 실무적으로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에 따라 연장 사유와 그 기간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있음.³⁾

□ 개정안은 권익위가 접수된 신고사항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⁴⁾함으로써 국회의 권익위의 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간접적으로나마 신고사건 처리의 신속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입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10조(신고사항의 확인) ⑥ 신고사항의 확인은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심사과장,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 등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제8조의2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의 국회보고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 등 헌법상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감시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함(「법제기준과 실제 2024」,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4, p.720)

- 공익신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따라 현행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의 비밀보장 규정을 두고, 비밀보장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신고자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제재를 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신고사건 지연 처리 사유와 기간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신고자 및 신고내용이 공개되거나 추정될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대한 보완방안을 아울러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연장사유와 기간을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있고, 신고자 및 신고내용 공개 우려 등을 근거로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10